2026학년도 북일고등학교 학생 출결 처리 지침

***원격수업(온라인수업)기간도 기본적으로 출석수업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출결사항

가. 수업일수

1)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2)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3)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4)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5)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제50조 제2항 참조).

나.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가)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나)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예) 2학년 4.15 자퇴, 다음 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결석일수는 제외

2) 출석 인정(공결) 처리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바)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차)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타)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파)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하) 그 밖에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마)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라)~바)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간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바)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사)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5)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1)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2)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라)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지각·조퇴·결과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 시간에 10분 이상 불참한 경우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수업 시간에 공적인 일로 일정 시간 수업에 불참한 경우

② 위클래스 상담 또는 진로 상담 및 지도 등의 사유로 인해 담당교사와 교과교사의 허락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③ 수업 시간에 긴급한 치료를 위해 보건실에 다녀온 경우

④ 보건교사, 담임교사, 교과교사의 허락을 모두 받아 보건실 입실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보건실 입실은 1일 최대 1시간 이내만 허용

⑤ 법정전염병 감염이 의심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보건교사의 판단하에 병원에 다녀온 경우는 예외로 함.

⑥ 교과 교사가 그 이유가 상식적이고 긴급한 사정으로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허용 시간을 연장하여 인정할 수 있음.

⑦ 그 외 교과 교사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적용함.

(가) 출결(결과) 처리 과정

(1) 과목 담당 교사는 매시간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NEIS에 입력

(2) 담임교사의 요청 시 (해당 교시를 '출석인정'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한함) 결과 기록 삭제 및 '비고'란 사유 기재

(3) 일자별·교시별 과목 출결마감

(4) 학급 담임교사는 과목 담당교사의 일자별·교시별 출결마감 이후 일·월 출결마감

4) 위의 나. 2)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 2025학년도 1학년부터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외에도,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출석률(1학점당 수업량(16회)의 3분의 2이상 출석)'이 적용됨.
> 따라서, 과목 담당교사는 매시간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나이스에 입력해야 함.
> (단, 출석인정 결석(결과)의 경우, 출석으로 반영)

5)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6)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7)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8) 지각, 조퇴, 결과는 횟수와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9)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라.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 수강학생 출결처리

1)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보 또는 전부를 「초·중등 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생의 출결은 등교수업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마. 학교 이외 기간·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출결 처리

1)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출결 상황을 그대로 입력하며, 위탁교육 기관은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 및 위탁교육 운영 방법과 형태에 따라 학생의 출결과 수강 여부를 확인한다.

2) 학생이 수업의 일부는 위탁교육기관에서 수강하고 일부는 학교에서 수강한 경우, 위탁교육 기관의 수업 일수 및 출결 내용과 소속 학교의 수업 일수 및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3)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수업의 일부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경우, 해당 학생의 출결을 위탁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바. 출결 특기사항 기록

1) 반드시 입력

(가) 개근 :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결과도 없는 경우

(나) 질병·미인정 결석: 학생의 출결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다만, 질병결석 사유를 입력할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은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에 따른 미인정 결석은 출결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다)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2) 입력할 수 있는 항목

(가) 횟수가 많은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이를 입력할 수 있음.

① 같은 사유로 3번 이상 단기 결석이 있다면 주된 사유 입력

② 5회 이상 반복적인 지각 혹은 조퇴 혹은 결과 사유

3) 입력 불가 항목

(가) 해외봉사활동

(나) 해외어학연수

(다) 교외대회 참가

(라) 출석인정결석(학교폭력관련 조치 사항 외 입력하지 않음)

사. 기타

1) 학생선수[1] 출결처리방법

(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50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나) 다만, 학생선수가 ①국가대표(꿈나무, 청소년대표, 국가대표 후보 포함)로서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②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장소, 명단 명시 등)에 근거하여 처리함.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3111(2024.11.13.) 참고

※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

---

1)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

※ 국가대표(꿈나무, 청소년대표, 국가대표후보 포함)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한 경우에는 훈련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함.

(다) 학생선수 출결처리에 따른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1일 단위의 대회 또는 훈련 참가의 경우 : 1일 단위로 누적하여 관리

② 대회 또는 훈련 참가로 인한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6시간(수업시간) 누적시 1일로 간주

예시) 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 참가로 조퇴 4시간, 결과 4시간, 지각 4시간을 한 경우 합산이 12시간이 되므로 2일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서 2일 제외함.

③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50일) 적용 방법은 출석인정 결석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로·졸업을 위한 출석인수 산정과는 무관함.

2) 학업 중단 숙려 참여 학생 출결처리 방법

(가)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숙려기간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7항).

※ 지필평가 기간에 학업 중단 숙려 기간은 부여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지필평가 기간과 학업 중단 숙려기간이 중복된 경우 지필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하지 못한 경우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은 북일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른다.

3)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방법 및 위탁학생 출결처리 방법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하여 적용한다.

4)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에 따른 출결처리 방법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하여 적용한다.

5) 그 밖의 출결처리 방법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하여 적용한다.

6) 기타 합의가 안 되거나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가) 학년별로 학년부장이 사안을 모두 수합한다.

(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을 심의한 후 처리 방침을 정한다.

(다) 방침이 정해지면 사안에 대해 모두가 일관되게 그 방침을 적용한다.

부칙 (2026.8.18.)

이 규정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